

허가번호 제 호

[]포획 []이식 []보관
멸종위기 야생생물 []채취 []가공 []훼손 허가증
[]방사 []유통 []고사

신청인	상호(성명)	연락처
	주소	
	조사 또는 사업명(해당하는 경우)	

허가사항	학명	멸종위기 등급	수량	목적·용도	지역

허가기간

허가조건

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4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[]포획 []채취 []방사 []이식 []가공 []유통 []보관 []훼손 []고사를 허가합니다.

년 월 일

유역 환경 청장
(지방환경청장)

직인

유의사항

1.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·채취 등을 하는 경우에는 허가증을 휴대해야 합니다.
2. 포획·채취 등을 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5일 이내에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.
3. 폭발물·덫·창애·울무·함정·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·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방법으로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포획·채취 등을 하지 못합니다.

(뒤쪽)

멸종위기 야생생물의 포획·채취 등 신고명세					
일시	학명	멸종위기 등급	수량	포획·채취 등의 장소	포획·채취 등의 방법